

CONTENTS

1. 농민 인권 논의 배경 및 동향
2. 유엔인권위원회 <농민권리선언>의 주요 내용 및 장점
3. 충남도 농민 인권 실태 분석
4. 정책 제언

농민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전환 방안

박 경 철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kcpark@cni.re.kr

최근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농민의 권리에 관심을 갖고 있음. 충남도 또한 <충남인권선언>에서 농어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선포한 바 있음. 이 글에서는 유엔 차원의 농민인권 논의를 살펴보고 충남도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요약

- 도시화의 빠른 진전과 무분별한 수입개방으로 우리나라 농민의 생존권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개도국 농민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임
- 이에 국제 소농 연대조직인 ‘비아캄페시나(농민의 길: La Via Campesina)’는 농민의 생존권을 유엔에서 보장할 것을 요구함. 유엔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유엔인권위원회 차원의 <농민권리선언>을 마련해 농민인권 보장을 모색하고 있음. 충남도는 2014년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통해 농어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선포한 바 있음
- 충남도 농민인권 실태를 파악한 후 향후 농민인권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농정의 틀을 사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 시설과 개발 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기본소득형 직불제를 확대하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야 함
- 둘째, 농민인권 논의의 장을 확대하고 제도화해야 함. 농민 인권 문제를 공론화해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정부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함
- 셋째, 농민 인권 증진을 위한 농민단체의 자율적 조직 구성과 활동 촉진이 필요함. 농민 인권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농민인권센터’ 설립, 농민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

01

농민인권 논의 배경 및 동향

1. 농민인권 논의 배경 및 동향

- 우리나라 농민은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된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농민으로서의 권한과 권리가 침해당함
 - 특히,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산물 개방 협상 타결 이후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고 도농 간 소득격차도 심화되어 결국 농민 삶의 질도 저하
- 농민의 생존권 붕괴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발생함.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국제 연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많은 농민 단체들이 생존권 투쟁을 전개함
 - 그 대표적인 활동단체가 국제 소농 연대조직인 ‘비아 캠페시나’(농민의 길: La Via Campesina)임
 - 이 단체는 2008년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 농촌의 소농, 특히, 개도국 농민의 생존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하는 〈농민권리선언〉(Declaration of Rights of Peasants – Women and Men)을 발표하고 이를 유엔 차원에서 채택해 줄 것을 요구
-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2012년 2월 69개국 148개 조직이 모인 비아 캠페시나의 이러한 요구가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이를 채택
 - 이후 유엔인권이사회는 비아 캠페시나의 〈농민권리선언〉을 토대로 유엔인권이사회 차원의 〈농민권리 선언〉을 채택하기 위해 실무그룹을 꾸려 2013년에 〈농민권리선언〉(정식명칭: 농민과 농촌지역에서 일하는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결의안을 마련하고 최종 채택을 준비 중

2. 충남도의 농민인권 논의

- 충남도는 도민의 인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4년 10월 13일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선포하고 도민 누구나 존엄하고 자유로우며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천명
 - <충남도민 인권선언>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등 대도시가 아닌 도 단위 인권선언으로는 처음이라는데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인권선언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농어민의 권리’를 처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가치가 있음
 - 다음은 <충남도민 인권선언> 제4장 일과 권리에서 규정한 ‘농어민의 권리’임

제4장 일과 권리

제12조 농어민의 권리

- ① 충청남도의 농어민은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받으며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농어업을 할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는 농어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다.

02

유엔인권위원회 <농민권리선언>의 주요 내용 및 쟁점

1. 유엔인권위원회 <농민권리선언>의 주요 내용

- 유엔인권위원회 차원의 <농민권리선언>은 2013년 6월 처음 발표된 이후 2017년 말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거쳐 발표됨
- 마지막 세 번째 유엔인권이사회 농민권리선언문은 2017년 3월에 발표되었고 이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논의과정을 가짐
 - 이 선언문은 두 번째 선언문을 바탕으로 유사 중복되는 조항을 간결하게 통합해 전체 27개 조항으로 줄으며, 구체적인 권리 조항은 다음과 같음

1)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의 정의, 2)국가의 일반 의무, 3)평등과 비차별, 4)여성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타 여성의 권리, 5)천연자원권과 발전권, 6)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7)이동의 자유, 8)사상, 의견, 표현의 자유, 9)결사의 자유, 10)참여의 권리, 11)생산, 마케팅, 유통에 관한 정보권, 12)정의에 대한 접근, 13)일할 권리, 14)일터에서의 안정과 건강에 대한 권리, 15)식량과 식량주권에 대한 권리, 16)적절한 소득과 생계 및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 17)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 18)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19)종자에 대한 권리, 20)생물다양성에 대한 권리, 21)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22)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 23)건강에 대한 권리, 24)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25)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 26)문화적 권리와 전통지식, 27)유엔과 기타 국제조직의 책임

2. 유엔인권위원회 <농민권리선언>의 주요 쟁점

- 현재 <농민권리선언>의 내용을 둘러싼 국가별, 국제사회그룹별 각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얹히면서 농민인권선언문에 관한 합의가 늦춰지고 있음
 - 특히 미국의 강력한 반대(UN General Assembly A/HRC/RES/30/13, 13 October 2015)로 인해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임

- 미국이 유엔의 <농민권리선언>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임
 - 첫째, 인권은 인류 보편적 권리이나 유엔의 <농민권리선언>은 소농(peasants)이라는 특정 그룹의 권리에 한정을 두었다는 것
 - 둘째,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소농이라는 집단의 권리를 규정하고 이들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임. 이것은 국제인권 규정과 법에도 맞지 않다고 함
 - 셋째, <농민인권선언>에서 제시한 많은 권리들이 전례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임. 특히, 종자권(rights of seed)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않는 정의(definition)이라는 것임

3. 유엔인권위원회 <농민권리선언>의 중요성

-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농민권리선언>은 개발도상국과 비아 캄페시나를 중심으로 국제 소농 연대조직의 강한 지지가 있고 유엔인권이사회도 농민권리선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임
- 첫째,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문제를 대응하는데 <농민권리선언>이 중요하다는 점임
 - 2020년부터 강제 실행되는 파리기후협약을 위해 각국에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청정에너지를 개발해야 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수급과 이용체계를 전환해야 함
 - 기후변화에 따른 전 지구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업과 식량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를
 - 따라서 농업과 식량체계, 토지관리는 각국이 파리기후협약을 지키는 중요한 부분이고,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타 사람들의 권리는 이러한 과정의 핵심이 될 전망이기 때문임
- 둘째,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실현하는데 <농민권리선언>이 중요하다는 것임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첫 번째 목표는 모든 형태의 가난을 종식하는 것임. 이는 농민권리선언문 가운데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 그리고 경제생활에서 여성의 평등권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 두 번째 목표는 식량안전, 영양 개선,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 증진임. 이는 농민권리선언 가운데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와 전 세계 식량의 공평한 공급 촉진을 포함해 국제 협력의 중요성과 관련이 있음

03

충남도 농민 인권 실태 분석

1. 인터뷰 조사 개요

- 충남지역에서 농민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농민과 이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 연구자, 지역 활동가, 교육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 실시
 - 대상: 농민 인권에 관심 있는 농민, 지역 활동가, 교육자, 연구원 등 모두 12명
 - 조사 기간: 2017년 5월~6월
 - 조사 내용: 농민 인권 세부 항목별 현재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농민인권에 관한 의견 및 정책 제안 등
 - 조사 방법: 설문조사 실시 이후 개별 또는 그룹 단위로 인터뷰 실시. 설문조사 시 농민인권 세부 항목별 현재 평가와 향후 중요도에 따라 0~10점으로 점수를 부여함

2. 주요 조사 결과

- 12개 농민 인권 항목 가운데 첫 번째인 <농민권>에는 5개 세부 항목이 있음. 이 가운데 현재 평가 점수로는 ‘모든 농민,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가 4.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식량주권의 권리’가 3.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향후 중요도 평가에서는 ‘식량주권의 권리’가 9.2점으로 가장 높았음
 -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권리는 어느 정도 동등하다고 생각하나 식량자급률(곡물 포함)이 24% 안팎인 것을 감안한다면 식량주권의 권리의 중요성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표 1] <농민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세부 권리 항목	현재 평가 점수 (0~10점)	향후 중요도 점수 (0~10점)
1. 모든 농민,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	4.6	9.0
2.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릴 권리	4.5	9.1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로 인한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4.5	9.1
4. 토지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구상, 의사결정, 실행, 모니터링에 참여할 권리	3.8	8.9
5. 식량주권의 권리	3.5	9.2

- 농민의 <생명권과 표준 생활권>에는 모두 13개의 세부 항목이 있음. 설문조사 결과 이들 13개 항목 가운데 현재 ‘적합한 주거와 의복을 누릴 권리’가 5.8점으로 가장 높았음
 - 반면 ‘적절한 소득을 보장 받을 권리’가 3.4점으로 가장 낮았음
 - 향후 중요도 평가에서는 ‘여성농민의 가정폭력, 성적, 언어적, 심리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9.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적절한 소득을 보장 받을 권리’가 8.9점, ‘존엄하게 살 권리’가 8.9점 순으로 나타남

[표 2] <생명권과 표준 생활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세부 권리 항목	현재 평가 점수 (0~10점)	향후 중요도 점수 (0~10점)
1. 방해, 퇴거, 박해, 임의 체포 등을 받지 않을 권리	5.3	8.4
2. 존엄하게 살 권리	4.9	8.8
3. 적절한 소득을 보장 받을 권리	3.4	8.9
4. 건강하고 총족한 음식과 전통 음식 유지 권리	5.3	8.3
5.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소비, 가족의 기본적 욕구 총족에 사용, 다른 사람에게 분배할 권리	5.3	8.6
6. 음용수, 위생, 교통수단, 전기, 통신, 휴식 등을 누릴 권리	5.6	8.3
7. 적합한 주거와 의복을 누릴 권리	5.8	8.2
8.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	5.3	8.3
9.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5.5	8.5
10. 살충제, 비료와 같은 농화학제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	4.2	8.5
11. 여성농민의 가정폭력, 성적, 언어적, 심리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4.2	9.2
12. 여성농민의 육체가 통제되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	5.1	8.7
13. 출산과 육아를 결정할 권리	5.5	8.8

- 농민의 <종자, 전통지식, 영농 활동권>에는 모두 8개의 세부 권리 항목이 있음. 이 가운데 ‘자신의 영농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5.7점으로 가장 높았음
 - 반면, 평가 항목 가운데 ‘농업의 산업모델을 거부할 권리’가 3.8점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종자를 결정할 권리’와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으로 위험한 작물을 거부할 권리’가 각각 4.1점, 4.3점 순으로 나타남
 - 향후 중요도 평가를 보면,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으로 위험한 작물을 거부할 권리’, ‘농어업의 토착지식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권리’,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해 자신이 선택한 기술을 사용할 권리’가 모두 8.9점으로 높게 나타남

[표 3] <종자, 전통지식, 영농 활동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세부 권리 항목	현재 평가 점수 (0~10점)	향후 중요도 점수 (0~10점)
1.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종자를 결정할 권리	4.1	8.8
2.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으로 위험한 작물을 거부할 권리	4.3	8.9
3. 농업의 산업모델을 거부할 권리	3.8	8.6
4. 농어업의 토착지식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권리	4.0	8.9
5. 농업, 어업, 축산시설을 사용할 권리	5.1	8.3
6. 자신의 영농방식을 선택할 권리	5.7	8.8
7.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해 자신이 선택한 기술을 사용할 권리	5.5	8.9
8. 농민이 생산한 종자를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권리	4.8	8.7

- 농민의 <농업 생산수단의 보유권>에는 모두 5개의 세부 권리 항목이 있음. 이 가운데 ‘영농에 필요한 자금, 자재, 도구를 획득할 권리’가 5.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정부의 농업예산의 계획, 집행, 적용에 관해 참여할 권리’는 3.7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향후 중요도 평가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는 우리나라 농민은 생산수단에 대한 접근권은 어느 정도 보장되지만 이를 결정하는 정책 과정에서는 거의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농민의 참여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표 4] <농업 생산수단의 보유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세부 권리 항목	현재 평가 점수 (0~10점)	향후 중요도 점수 (0~10점)
1. 영농에 필요한 자금, 자재, 도구를 획득할 권리	5.5	8.5
2. 사회, 문화, 윤리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의 생산 도구와 기술을 습득할 권리	4.8	8.4
3. 농업생산을 위한 관개 등 수리권	5.4	8.5
4. 농산물 판매를 위한 운송, 건조, 저장시설을 사용할 권리	5.1	8.3
5. 정부의 농업예산의 계획, 집행, 적용에 관해 참여할 권리	3.7	9.0

● 농민의 <농업 가치의 보호권>에 모두 4개 세부 권리 항목이 있음. 이 가운데 ‘향토지식을 발전시키고 보호할 권리’가 4.6점으로 가장 높았음

- 반면, ‘농업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개입을 거부할 권리’와 ‘농민의 정신성을 표현할 권리’는 각각 3.3점, 3.6점으로 낮게 나타남
- 향후 중요도 평가에서도 ‘농업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개입을 거부할 권리’가 9.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는 농촌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많은 개입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또한 농민의 정신성을 표현할 권리도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표 5] <농업 가치의 보호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세부 권리 항목	현재 평가 점수 (0~10점)	향후 중요도 점수 (0~10점)
1. 문화와 지역 농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보호할 권리	4.5	9.0
2. 향토지식을 발전시키고 보호할 권리	4.6	8.6
3. 농업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개입을 거부할 권리	3.3	9.3
4. 농민의 정신성을 표현할 권리	3.6	8.9

● 마지막으로 농민의 <생물다양성 수호권>에 대한 평가 결과 대부분의 권리 항목은 낮게 나옴. 이 가운데 ‘초국가적 기업이 만든 인증제를 거부할 권리’가 2.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전체 4개의 세부 권리 항목 가운데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발전시킬 권리’만 3.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다른 항목은 모두 낮게 나타남
- 반면, 향후 중요도 평가 결과, ‘초국가적 기업이 만든 인증제를 거부할 권리’가 9.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 같은 결과는 초국가적 기업이 만든 인증제에 대해 농민들은 앞으로도 강하게 거부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음

[표 6] <생물다양성 수호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세부 권리 항목	현재 평가 점수 (0~10점)	향후 중요도 점수 (0~10점)
1.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발전시킬 권리	3.5	9.2
2.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특허물(작물, 식품, 의약품)을 거부할 권리	3.0	9.1
3. 농민공동체 소유의 상품, 서비스, 자원, 지식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거부할 권리	3.3	9.0
4. 초국가적 기업이 만든 인증제를 거부할 권리	2.8	9.3

04 정책 제언

- 충남도 농민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과 세부 정책 과제가 필요함
- 첫째, 농정의 틀을 사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
 - 세부 정책 과제로는 1)기본소득제와 같은 보편적 소득보장 정책 도입, 2)충남도 농업환경실천사업의 확대, 3)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 확대 및 여성농업인 전담조직 설치 등이 있음
- 둘째,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함
 - 세부 정책 과제로는 1)중앙정부의 농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 관련 정책을 유엔인권이사회 <농민권리 선언> 기준으로 재편, 2)충남도 차원의 농민인권 증진 시책 추진과 관리(모니터링), 3)중요 농민인권 지표 관리를 위한 ‘충남형 농민인권 체크리스트’ 관리 등이 있음
- 셋째, 농민인권을 본격적인 인권 논의의 장으로 확대해야 함
 - 세부 정책 과제로는 1)국가인권위원회 내 농민인권 담당 조직 및 담당관 설치, 2)농림축산식품부 내 농민인권증진담당관 설치, 3)인권관련 NGO 내 농민인권 논의 증진 등이 있음
- 넷째,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함
 - 세부 정책 과제로는 1)인권관련 법과 조례, 규정 등에 농민인권에 관한 내용 포함, 2)인권증진 관련 계획 내 농민인권 포함, 3)충남인권센터의 적극적인 역할 등이 있음
 - 현재까지 인권관련 법과 제도에는 농민 인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지만 향후 유엔 차원의 농민권리 선언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관련법과 제도에도 농민인권을 포함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농민단체의 자율적 조직 구성과 활동을 촉진해야 함

- 세부 정책 과제로는 1)농민인권 증진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필요, 2) ‘농민인권센터’(가칭) 설립을 통한 농민인권 증진, 3)농민단체 및 조직 내 인권교육 실시 등이 있음
- 농민인권이라는 보편적 권리를 연결 고리로 해서 농민단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농민인권센터’(가칭)와 같이 농민인권 증진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조직체 구성이 필요함

[표 7] 충남도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정책 과제	세부 정책 과제	비고(실행 주체)
1. 농정의 틀을 사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전환	1) 기본소득제와 같은 보편적 소득보장 정책 도입	중앙정부(농림부)
	2) 충남도 농업환경실천사업의 확대	중앙정부, 충남도
	3)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의 확대 및 여성농어업인 전담조직 설치	충남도
2.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 필요	1) 중앙정부의 농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 관련 정책의 <유엔농민권리선언> 기준으로의 재편	중앙정부
	2) 충남도 차원의 농민인권 증진 시책 추진과 관리(모니터링)	충남도, 농민단체
	3) 중요 농민인권 지표 관리를 위한 ‘충남형 농민인권 체크리스트’ 마련 및 관리	충남도, 농민단체, 연구기관
3. 농민인권을 본격적으로 인권 논의의 장으로 확대	1) 국가인권위원회 내 농민인권 담당 조직 및 담당관 설치	국가인권위원회
	2) 농림축산식품부 내 농민인권증진담당관 설치	중앙정부
	3) 인권관련 NGO 내 농민인권 논의 증진	인권관련 NGO단체
4. 법과 제도적 틀 마련	1) 인권관련 법과 조례, 규정 등에 농민인권에 관한 내용 포함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2) 인권증진 관련 계획 내 농민인권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정부
	3) 충남인권센터의 적극적인 역할	충남도
5. 농민단체의 자율적 조직 구성과 활동 촉진	1) 농민인권 증진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필요	농민단체, 중앙정부, 인권기관 및 단체, 정당, 전문가 등
	2) ‘농민인권센터’(가칭) 설립을 통한 농민인권 증진	농민단체 등 NGO
	3) 농민단체 및 조직 내 인권교육 실시	농민단체, 충남인권센터 등

박 경 철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041-840-1206, kcpark@cni.re.kr

* 본 글은 충남연구원 2017 전략과제 “충남도 농민인권 실태 및 정책 과제”를 요약하고, 현 시점에 맞게 보완한 것임.

- 농림부. 제1~3차 <농립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류은숙. 2009. 인권을 외치다. 푸른숲.
- 박경철. 2014. 충남도 농촌주민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전략과제.
- _____. 2015. 충남 농업인인권 현황과 과제. 『열린 충남』 겨울호, 29~33.
- 성태규 등. 2014.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2015~2019). 충청남도.
- 이수미. 2016. 농민의 권리, 유엔농민권리선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제242호 이슈보고서
- 조효재. 2011. 인권을 찾아서. 한울.
- 충청남도. 2014.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 충청남도. 2017. 도민인권 증진시책 추진상황 보고회 자료.

- Golay, Christophe. 2013. Legal reflec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Geneva Academy.
- Golay, Christophe. 2015. Negotiation of a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Academy in-Brief No. 5. Geneva Academ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 La Via Campesina. 2009. Declaration of Rights of Peasants - Women and Men
- Sangkyung, Lee. How can the Rol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be Functionally Divided in Order to Better Protect and Enhance Human Rights in Korea?. <세계헌법연구> 제21권 1호, 165~195.
- UN Human Rights Council. 2012. Final study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on the advancement of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 UN Human Rights Council. 2013.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 UN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2016. Opening statement of Ms. Jyoti Sanghera in Third session of Working Group on a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Geneva 17 May 2016).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농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 워킹 그룹(Park 1~2): <http://www.apil.or.kr/1381>

비아 캄페시나_La Via Campesina: <http://viacampesina.org/>

유엔인권이사회: <http://www.ohchr.org/en/hrbodies/hrc/pages/hrcindex.aspx>